

인권의 담론과 성경의 관점에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김영길 백석대 박사과정

I. 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본 글은 ‘인권의 담론과정에 나타난 자기과거적 현상연구’(철학박사 논문)에서 현재 한국 교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최근 한국교회 및 우리사회 이슈 중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정의당 장혜영안)’에 대한 논란이다. 현재 해당 법사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까지 작성되었다.¹⁾ 보고서에서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법질서 변동을 가져오며, 법체계의 충돌 우려가 있다고 작성되었다. 그 이유로 첫째, 성별과 관련된 법의 체계를 전부 바꿔야 한다. 둘째,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5배까지 부과함으로써 기존 3배 이하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차이가 있다. 셋째, 기존체계와 다른 입증전환 책임이다. 현재 소송체계는 손해 정도에 대하여 원고책임이지만 이 법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사회는 전체적으로 법과 사회질서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더 쉽게 설명하여 현재의 남자 여자의 성별개념에 근거한 모든 법률과 사회의 질서와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사실이다. 가령 남성만 소집하는 병역법, 짝수 홀수로 남녀를 구분하는 주민등록법,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맺는 결혼제도, 여중 남중으로 구분하는 학교기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스포츠 대회, 화장실... 등 모든 사회구조를 바뀌어 질 수 밖에 없다.

1)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9569> 법률방송뉴스. 2020.9.24일자

특정 집단과 개인을 위해 기본적인 사회구조를 통째로 전환하는 엄청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민변 등 소위 진보 단체와 KBS 등 주요 공중파 방송과 진보 계열의 언론들은 찬성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은 지난 3월 여론조사의 결과 일반국민들은 88.1%가 찬성(한교총 9.2일 여론조사 결과 40.0%²⁾)하고 있다고 과장하고 있다. 또한 진보계열의 교회 및 단체들도 덩달아 찬성 활동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물론 교인들까지 혼란해하고 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 체계의 문제점도 있지만 심각한 것은 성경 말씀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성적지향(동성애자), 성정체성(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창조질서를 위반하고 최악의 법제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 있다. 바로 ‘소수자 인권’과 ‘평등’의 개념이다.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적 용어인 ‘인권과 평등’이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기도 한다. 이를 세계관의 차이라고도 한다. 이에 필자는 소수자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인권의 기원과 특징

1. 인권의 기원

인권의 기원 문제를 두고 20세기 초 옐리네크(Georg Jellinek)와 부뜨미(Emile Boutmy)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부뜨미는 사상적 부분을 강조하여 18세기의 프랑스 계몽철학, 특히 루소가 인권의 효시이며,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라고 하며,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옐리네크는 이보다 먼저 역사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그는 1776년 버지니아 헌법이나 기타 각주의 헌법에 규정된 권리장전이 기원이 되었으며, 1789년의 프랑스 선언문도 이에 따른 모델이라고 하면서, 인권의 역사는 미연방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고 하였다.³⁾

인권의 기원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공통점으로는 역사적 경험과 밀접

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02MW211218158028> 문화일보. 2020.9.2일자

3) 지영준. 2020. 「인권과 기독교」. 『생명과 성 I』. 킹덤북스. 261.

한 연관성을 가진다⁴⁾는 점이다. 인권의 역사성은 사회적 특성과 차별성에 의해 인권의 기본적인 보편성이 제약되어 왔고, 이는 현대에서도 인권사상의 역사성 및 변화과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인권의 근원적 문서와 그 기원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인권의 주체라고도 하고 인권의 기원이라고 한다. 즉 인간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에서 부터 시작됨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권리가 주어졌다. 따라서 인권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천부적 인권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하여 종교적 또는 신학적 접근이라며 거부하거나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인권 담론의 역사는 근대 시민혁명으로부터 보지만 인권의 기초가 된 자연권과 그 사상적 근원을 고대 성경으로까지 올라간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인권의 용어적 기원에 대하여 1791년 토마스 페인(T. Paine)이 지은 ‘인간의 권리’로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 책은 31개의 글을 모은 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의 자연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 때 대중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저서이다.⁵⁾ 이를 통해 현대의 인권사상이 서구의 정치적 투쟁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근대 및 현대 인권의 유형과 형태

1776년 선언된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게 자유롭고도 자주적이며 일정한 천부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간들이 한 사회의 성원이 될 때, 예컨대 생명과 자유의 향유와 같은 그러한 권리를 후손들로부터 박탈할 수 없다”⁶⁾라고 하고 있다.

4) 유흥림, 2011. 「현대 자유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정치사상 : 현대 인권담론의 쟁점과 전망』, 이학사, 80.

5) 이 책은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에서 프랑스 혁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비판한 책이다.

이 당시만 해도 고대 공화주의에서 출발한 시민권이 인권사상과 밀접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권이 인간의 정치공동체 삶을 전제로 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고 또한 인권도 개인과 정치공동체의 갈등과 조화 속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자유와 평등권을 이 시대로 기원하고 한정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본다. 고대에서 그리스인과 야만인을 구별하였고, 로마인들은 혈통과 시민권, 공적에 따라 차별하였으며, 중세에는 신자와 비신자의 엄격한 구분이 있었기 때문이다.⁷⁾

중세 말 이후 르네상스로부터 17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나타난 자연권은 사회적 필요와 현실에 기초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념으로 나타났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저술, 영국의 대헌장 및 권리장전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모두 인간에게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가 있음을 기초하여 기술되었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17~18세기 데카르트(René Descartes), 로크(John Locke), 디드로(Denis Diderot), 몽테스키외(Baron Montesquieu), 루소(Jean-Jacques Rousseau) 등의 사상가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18~19세기에는 절대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때 나타난 주요 문서들로 미국의 1776년 독립선언문, 1789년 프랑스 시민권, 1791년 미국의 권리장전 및 1787년 미국의 헌법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 가운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구체적 권리로 자유권·생명권·행복추구권이 최초로 제시되었다.

한편 1843년에는 마르크스에 의해 ‘인간의 권리’가 등장하였다. 그의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Zur Judenfrage」에 정리되어 있다.⁹⁾ 이 문서는 유대인의 정치적, 사회적 정황에 대하여 청년 헤겔학파의 친구였던 브루노 바우어(Bruno Bauer)가 내놓은 두 편의 연구에 대하여 비판한 문서이다.

근대 국가 출현이후 인권의 유형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한 학자는 프랑스 법학자

6) Virginia Bill of Rights (1776.6.12.) : That all men are by nature equally free and independent, and have certain inherent rights, of which, when they enter into a state of society, they cannot, by any compact, deprive or divest their posterity; namely, the enjoyment of life and liberty, with the means of acquiring and possess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

7) 유흥립. 앞의 책, 82.

8) 위의 책, 83.

9) 카르 마르크스. 2015. 김현 역. 「카르 마르크스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책세상. 서문 참조.

바삭(Vasak)¹⁰⁾의 주장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다. 1세대는 ‘시민 정치적 권리’이고, 2세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3세대는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권리’라고 분류하고 있다¹¹⁾. 그러나 이 주장은 인권의 역사를 분석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인권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마샬(Marshall)은 인권의 유형을 ‘시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 세 요소로 나누고, 이 역사를 18세기에는 ‘시민적 권리’, 19세기에는 ‘정치적 권리’, 20세기에는 ‘사회적 권리’로 구분하였다.¹²⁾ 또한 이샤이(Micheline Ishay)는 계몽 시대의 권리를 ‘시민적 자유 및 기타 자유권’으로 분류하고, 산업혁명시대의 권리를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평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식민주의 이후 시대에 나타난 권리를 ‘공동체적 유대 또는 민족적 연대’로 분류하였다.¹³⁾

루만(Niklas Luhmann)은 17세기에는 ‘계약설’로 분류하고, 18세기 말에 나타난 헌법과 이후 국제인권법 등의 제정을 통한 ‘인권의 제도화’로 분류하였으며, 20세기 후반 복지국가에서 인권의 목록들이 생기면서 인권의 과밀화 현상이 전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인권 침해’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았다.¹⁴⁾ 이러한 모든 논리들은 대부분 역사성과 권리 목록상의 분류적 측면에서 구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기독교 철학자 월트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사람들이 인권과 인권이 소유하는 권리를 혼동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이 소유한 권리 중에 하나다”라고도 하며 “UN문서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목록을 나열한 것 뿐이다”라고 하였다.¹⁵⁾ 특히 그는 이는 신과 인간 사이에 주어지는 본질적인 권리(Standing rights)이기 때문에 인권의

10) Vasak was the editor of a book called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Human Rights’ which was published in 1982 (ISBN 0-313-23394-2).

11) 지영준. 2019. 앞의 책. 56.

12) Marshall, Thomas H. 1950. “Cizenship and Social Class.” in Jeff Manza and Michael Sauder eds., Inequality and Society. W. W. Norton and Co. 2009. 149-154, 정성훈. 2012.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위기와 인권도시의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381-406.

13) Micheline R. Ishay, 2008.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Berkeley and Los Angeles. 37, 정성훈. 위의 책. 381-406.

14) 루만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는 N. Luhmann, 1965. Grundrechte als Institution: Ein Beitrag zur politischen Soziologie. Berlin: Ducker und Humbolt. 12. ; N. Luhmann, “Zur Funktion der ‘subjektiven Rechte’,” in N. Luhmann, 1999. Ausdifferenzierung des Rechts: Beiträge zu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Frankfurt/M: Suhrkamp.. 360-373 참조.

15) 월트스토프. 2017. 『하나님의 정의』. 배덕만 역. 복있는 사람. 93-94.

정당성을 자연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¹⁶⁾ 인간이 타고나는 재질, 특성, 환경 등을 통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연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담론의 역사에서 주목할 점은 인권의 본격적 시작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나, 프랑스 시민혁명에 나타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인본주의 사상이 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며, 인간은 창조주께서 직접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생명권, 소유권 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바탕위에 점차 참정권, 수익권으로 확대되어 나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인권의 근거는 자연법이나 인간의 이성에 있으니, 사람의 권리를 모두가 존중하고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이성적 인본주의 인권론에 동조되어 주장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인권의 근거로 제시되는 자연법이나 이성의 법칙이 너무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 과연 이 방법도 타당한지 객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날 인권의 본격적 등장은 나치 전체주의와 2차 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참상을 겪게 되면서 나타났고, 이후 인류구원의 새로운 이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나치즘과 2차 세계대전은 나치 독일에 의해 부각된 실증주의 법체계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인류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불변적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 담론이 감정적인 발전동기가 아닌 아주 실용적인 발전동기에서 비롯되었다’¹⁷⁾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결과론 적으로 자연권 사상이 부활하면서 1948년 UN 총회에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공포됨으로써 인권시대가 그 막을 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후 인권은 초대형 광풍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어 전세계 만민의 우상화 되어 버렸다.

3. 보편적 인권의 특징

16) Nicholas Wolterstorff. 2008. *Justice: Rights and Wrongs*. Princeton University Press. 316.

17) 새뮤얼 모인. 2011. 「인권이란 무엇인가」. 공민희 역. 21세기북스. 6.

인권선언에 나타난 인권의 몇 가지 특징이 주장되고 있다. 먼저 보편적(universal)인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imprescriptible or inviolable)성을 가지고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언급된 인권의 기본적인 성격에서도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다’¹⁸⁾라고 천명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자연적이고 천부적 인권은 천부성, 보편성, 항구성, 불가침성의 특징이 있고 다른 인간의 권리와 구별된 사항으로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 등으로 다른 권리와 구별되는 원칙과 특성이 있다고 본다.¹⁹⁾

1) 보편성이다. 인권은 무엇보다 ‘모든 인간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보편적 주체성이 있는 보편적 권리(Universal Rights)다. 이는 부나 권력, 인종이나 성별, 장애여부 등 인간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권리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향유한다면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

2) 도덕성이다. 인권은 어떠한 시대와 공간에서도 인정되어야만 하는 보편적 효력이 인정되는 도덕적 권리(Moral Rights)이다. 따라서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는 인권이라고 부를 수 없다. 물론 일정한 권리들이 대단히 중요한 경우에는 각 국의 형편에 따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될 수는 있다.

3) 근본성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 또는 기본적 권리(Basic rights)이다. 따라서 다른 권리는 포기하더라도 이 권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4) 추상성이다. 인권은 의미 내용의 경계가 대단히 불확정적인 추상적 권리(Abstract rights)를 가진다. 따라서 인권은 구체적 권리가 되기 위하여 의미 내용의 경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인권의 추상성은 인권의 다른 특성 즉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에서 유래한다.

5) 우월성이다. 인권은 실정법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우월적 권리(Priory rights)를 가진다. 이를 도덕성이라고 하지만 실정법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인권이 실정법을 판단하

18) 이와 관련된 자료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원문과 번역본 등 관련된 자료 참고.

http://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565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j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8.

19) 권영성. 1994. 『헌법학 원론』. 법문사. 307. / 지영준, ‘교회와 인권의 역사, 그리고 동성애’, 학술포럼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2019.1.28., 국회 포럼집. 58.

는 기준이 되고, 실정법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대 인권이론에서 인간의 권리 문서가 구체화되면서 자연적 인권론에 대하여 점차 약화되거나 부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자연권론이 신학적 이론과 접목되어 있다. ② 자연권은 불가침, 절대적, 불변적이라는 특성으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③ 자연권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권 등에 한정하여 확장성이 제한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²⁰⁾ 이는 인간의 본성과 신학적 특성을 배제하는 전제하에 자연권의 제한된 특성만을 바라보는 협소한 논리일 뿐이다. 그런데 이 논리들도 무엇보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소중함과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인권의 기원과 특징에 따른 분류

그럼 본질적으로 인권을 누가 주었는가? 인간이 누리는 권리라고 하면 과연 누가 그 권리를 부여하는가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공동체, 헌법, 군주... 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그 기원을 'UN 인권선언'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정도이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권리'의 초기 출발점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 존엄성과 가치성에 대한 확인임을 주지하였다. 이에 필자는 오늘날 인권의 유형을 인권의 기원과 특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상대적 인권, 그리고 자의적 인권 등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1. **천부적 인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인간의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며, 중세 계몽시대를 지나면서 자연권으로 나타났다. 생명권, 자유권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종교의 자유'가 대표적이며, 이에 따라 정교분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보편적 인권**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 규정한 인간의 권리이다. UN인권선언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으로 명시된다. 참정권, 소유권 등이 대표적이다.

20) J. R. Pennock. 1981. "Rights, Natural Rights, and Human Rights: A Genral view," Nomos X XIII. Human Rights: New York, Press. 3.

3. **상대적 인권**은 인간이 생각하는 일정한 이념에 따라 특정 집단 중심의 권리이다. 카르 마르크스가 최초 주장하였으며, 특정 사회공동체를 중시하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명분으로 ‘소수자 인권’을 주장한다. 사회권, 복지권 등이 대표적이다.

4. **자의적 인권**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 결정하는 권리이다.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욕망과 무절제와 관련이 있다.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자기결정권, 낙태의 근거가 되는 자기신체결정권, 성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성별자기결정권 등이 있다.

천부적 인권의 기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① **절대성(보편성)**이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창 1:26) 따라서 인간의 권리는 창조주로부터 받았기에 절대성을 지닌다. 이를 1948년 UN인권선언과 학술적으로는 보편성이라고 한다.

② **위임성(불가분성)**이다.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창 1:28) 그래서 불가분성을 지닌다. 이는 특정집단이나 개인 등 소수에게만 있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이다. 이를 1993년 비엔나 인권원칙에서는 모두를 위한 ‘불가분성’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다.²¹⁾

③ **제한성(조건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권리를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인간의 권리를 제한하셨다.(창 2:17).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IV.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근거, ‘상대적 인권과 평등사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 이념에 따라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 집단 및 개인’에 한하여 인권을 적용한다는 법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의 인권 유형은 ‘상대적 인권’ ‘자의적 인권’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하며 자의적 인권은 한 개인만의 사상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카르 마르크스(Karl Marx)이다. 그는 1844년 『유대인을 위하여』 라는 저서에서 ‘인권은 사회문화적인 산물로서 시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발달한다. 인권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해

21) 외교부 인권자료.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참조.

획득한 산물이다. 인권은 인간해방을 하는 도구이다²²⁾라고 주장하였다.

엥겔스는 1884년에 Marx가 남긴 유작을 통해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을 출간하면서 ‘억압없는 사회, 사회주의 건설’에 꼭 필요한 저술이라고 평가하였다. 레닌도 이 저서를 ‘근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저서’라고 언급한 바 있다.²³⁾ 이 저술에서 가족제도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제도 출발을 결혼제도로 보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개념이 이 땅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제도로 나타나 기독교 교회를 통해 재현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가족제도와 성경을 장애물로 보고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일처제는 촌충(기생충)과 같다’라고 하고 있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적 용어가 ‘소수자(Minority)의 개념이다. 상대적 인권은 1970년대를 거치며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권이 증시되고, 소수자 중심의 정체성이 나타나면서 국제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힘을 축적하였으며,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며 나타난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최초 시행은 볼셰비키 혁명(1917년) 후 지주와 교회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하기 위한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한 평등권 차원에서 지주들의 사유재산의 부정과 교회의 재산 몰수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유일한 여성위원인 알렉산드라 콜론타이(1872~1952)는 러시아 혁명 1년 후 제노텔(여성부)를 설치하고 ‘여성 평등’을 주장하였다. 콜론타이는 ‘가족관계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부르조아적 관계이다’라며 정상적 가족제도를 회피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녀는 오늘날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모성해방’, ‘무상보육’, ‘일부일처제 모순’ 등과 동일한 구호를 통해 ‘가족은 혁명적 사회 구조 안에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²⁴⁾고 주장하였다.

이 상대적 인권의 특징은 ① 인권의 원칙과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② 이념적 성향으로 사회를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약자에게는 감성적 접근과 사회권을

22) Karl Marx. 1988. Judenfrage. in: Marx and Friedrich Engels. MEW1. Berlin. 362, 370.

23) 프리드리히 엥겔스. 2012.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김대웅 역, 두레. 311-312.

24) 한정수. (2008)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 제18권 제2호. 296-299.

중시하였다. ③ 소수자 인권을 내세워 정치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④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성을 강조하였으며, ⑤ 획득된 권력은 법을 통하여 정립하나 대중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²⁵⁾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명 평등법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을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개념은 형식적인 법적 평등을 말한다. 법적 평등은 ‘자유권 행사를 위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며, 헌법 11조의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이나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법적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²⁶⁾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에 각 개인에게 자유를 주었고, 인격을 주셨으며,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에 따라 평등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① 평등은 절대 평등과 상대 평등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 동일한 환경이 될 수 없기에 절대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즉 인간은 각자의 능력과 인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 질서와 규칙을 정하고 이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 평등에 따른 사실적 평등, 또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한다.

② 평등의 해석과 적용에는 원칙이 있다. 이를 자의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본질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한다. 인간은 각자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고 대우해야 한다. 그런데 성(Gender)평등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면 여성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③ 실질적 평등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구조는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과정에도 최대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과는 결과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과정과 결과에도 동일한 평등을 적용하면

25) 김영길. 2020. ‘인권의 담론과정에 나타난 자기과거적 현상연구’. 박사학위 논문. 254.

26) 대인적 관계로 실질적 양성 평등을 구현하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4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36조 제1항을 근거한다. 안창호. 2020 ‘포괄적 차별금지법 실제알기’. 차별금지법 세미나 자료집. 7.

우리 사회의 규칙과 법적용은 무의미하고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대학 입시과정에 기회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합격과정에 ‘부모찬스’(예, 조국자녀 입학 사례)를 사용하거나 시험 결과도 평등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학교는 정원 숫자만큼만 학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V.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e)’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창 1:26)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살펴본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시 99:3). 이 속성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과 종교심을 주셨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말씀하시고²⁷⁾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양심과 종교심이 주어져 있다. 이 양심에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요 1:12 등).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 양심을 통해 억제하고 자제하도록 구조되어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본적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돌이키며 바르게 살려고 한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특징요소는 인간의 기본적 양심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출 3:14). 이 속성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으로 그 분이 가지신 속성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죄의 종 되었던 우리 인간에게 또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신다.²⁸⁾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여 방종하고 타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인간의 자유권 즉 자기결정권을 남용하게 세상의 법으로 합법화 하고 있다.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을 인정하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성별을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하는 성별자기결정권까지 차별금지법안을 통해 합법화하여 죄악의 종노릇하게 할 뿐

27)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레위기에서 44번 등 총 850여회 말씀하고 계신다.

28)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아니라 이러한 죄악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과 목사들을 법적으로 제재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요 1:1). 이 속성으로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창 1:1, 시 19:1). 예수님도 자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요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요 1:14). 기독교는 말씀이 곧 능력이며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속성에 따라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다. 아담에게는 이 언어를 통해 각종 동물과 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창 1:19). 하나님은 홍수사건 이후 함의 후손들이 벌인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행위를 벌하였다. 특히 우리 인간들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흠어버리셨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언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법률 용어에 포함하여 ‘젠더’와 ‘퀴어’를 합법화하고 있다. 젠더(Gender)는 남성과 여성 자체를 부정하는 성별정체성의 합법화 용어이고, 퀴어(Queer)는 ‘혼란스러운’의 동성애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과 사람들은 평등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이는 사람의 속성상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열등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평등을 잘 분별해야 한다. 이를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다.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의 왕으로 축복하였다. 그가 지혜로운 왕으로 인정된 사건이 평등을 분별한 재판사건이다.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분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솔로몬은 아이를 죽여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자는 여인의 잘못된 주장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였다.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젠더와 동성애와 맞서 싸운다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의 욕망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스며들어있는 이데올로기와 싸워 힘들어하는 귀한 영혼들을 구하는 거룩한 사명인 것이다.

< 참고 문헌 >

- 권영성. (1994). 『헌법학 원론』. 법문사.
- 김비환. (2010). “현대 인권담론은 쟁점과 전망”. 『인권의 정치사상』. 이학사.
- 안창호. (2020).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제 바로알기』.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 세미나 자료집(2020.8.14.).
- 유홍림. (2011). “현대 자유주의와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정치사상 : 현대 인권담론의 쟁점과 전망』, 이학사.
- Nicholas Wolterstorff. (2013). *Journey toward Justice*. 배덕만 역(2017). 『하나님의 정의』. 복있는 사람.
- 지영준. (2020). “인권과 기독교”. 『생명과 성 I』. 킹덤북스.
- (2019). “교회와 인권의 역사, 그리고 동성애”. 학술포럼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국회 포럼집(2019.1.28).
- 정성훈. (2012). “보편적 인권 정당화의 위기와 인권도시의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제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한정숙. (2008)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 제18권 제2호. 287-338.
- Friedrich Engels. (1884).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김대웅 역(2012).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두레.
- Karl Marx. (1843). *Zur Judenfrage*. 김현역(2015).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책세상.
- John M. Frame. (2015).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nd Theology*. 조계광 역(2018). 『서양철학과 신학의 역사』. 생명의 말씀사.
- Samuel Moyn. (2010). *The Last Utopia*. 공민희 역(2011). 『인권이란 무엇인가』. 21세기 북스
- Karl Marx. (1843). *Zur Judenfrage*. in: Marx and Friedrich Engels. MEW1. Berlin.
- Marshall, Thomas H. (1950). “Cizenship and Social Class.” in Jeff Manza and Michael Sauder eds(2009). *Inequality and Society*. W. W. Norton and Co.
- Micheline R. Ishay, (2008).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Berkeley and Los Angeles.
- N. Luhmann, (1965). *Grundrechte als Institution: Ein Beitrag zur politischen Soziologie*. Berlin: Ducker und Humbolt.
- Nicholas Wolterstorff. (2008). *Justice: Rights and Wrong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 R. Pennock. (1981). "Rights, Natural Rights, and Human Rights: A Genral view," Nomos XXIII. *Human Rights*:. New York, Press.